

##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99. 12. 1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99. 12. 20  
다. 상정일자 :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상정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3차 회의, 토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보고서 채택  
제6차 본회의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제2차 공유재산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주민의 토지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부담율 완화 : 10년이내 연8% → 10년이내 연5%
- 경작목적의 토지대부시 대부료 부과기준 명확 : 농지소득금액에 기준하여 사후 징수 →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공유재산 대부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
- 건물 대부료 산출시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하고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잡종재산의 신탁제도 도입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범위 확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는 제2차 공유재산 개선대책에 의하여 99. 4. 30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주민의 토지매각대금 분할 납부 이자부담을 완화하는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배려하였고 경작 목적의 토지대부시 대부료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등 공유재산관리 행정의 효율성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수는 향상을 위한 개정이라고 하겠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